




04 인증 및 주의·경고표시 기준 및 방법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습니다.

Q 안전인증 표시방법은?

구분	도안 모형	도안요령
안전인증	 (안전인증번호:)	1) 안전인증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2) 안전인증표시의 색채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금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안전확인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번호:)	1) 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2) 안전확인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공급자 적합성확인		1) 안전에 관한 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2) 안전에 관한 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권리표면

제27조(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

권리표면

제39조(안전확인표시)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

권리표면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Q 주의·경고표시 기준은?




주의·경고 표시의 도형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도안 모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규정하지 않고 주의·경고 내용이 있는 경우 아래의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도안모형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의·경고 내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기준]

⚠ 주의		⚠ 경고	
①	②	①	②

- ① 제품의 주의·경고 내용에 따라 KS S ISO7010(그래픽 심볼-안전색과 안전표시-등록된 안전표시)의 안전표시를 참조하여 삽입
- ② 주의·경고 문구
 - * 주의표시의 색채는 노란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 * 경고표시의 색채는 주황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 표시기준 예시 |

⚠ 주의	⚠ 경고	⚠ 경고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세요	 3세 이하 사용 금지	 에어백이 설치된 앞좌석에는 설치금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표준

제27조(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등)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

관련표준

제39조(안전확인표시)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주의·경고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표준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 ②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주의·경고표시”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Q 표시사항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 그림은 표시사항 예시입니다. 표시사항은 품목별로 다를 수 있으니, 품목별 안전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열람

[표시사항 예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사항

- 모델명 : ABC-1
- 제조년월 : 2019. 03.
- 수입/제조자명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50
- 전화번호 : 1833-4010
- 사용연령 : 8세 이상
- 제조국 : 한국
- 재질 : 플라스틱

주의사항

- 용도 이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화기에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 입에 넣고 빨면 안됩니다.
-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 직사광선과 고온을 피하십시오. 안전인증번호 : CB123A456-7001



 주 의	 경 고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세요	 0-3  3세 이하 사용 금지 입에 넣지 마시오.

